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1호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는 서포트를 축으로 드롭가이드와 스톱퍼를 활용한 거푸집 설치·해체 드롭 공법 (SSFD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주)에이씨피(백희정)		
	주 소	우 27712,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로 233번길 18-23 (소이면)		
	전화번호	043-873-9201	팩스번호	043-873-9203
신청인(2)	법인명(성명)	(주)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한상규)		
	주 소	우 0617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0 (대치동, 미래에셋타워 A동 17층)		
	전화번호	02-552-0025	팩스번호	02-552-9393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958호
- 명 칭 : 콘크리트 하중을 지지하는 서포트를 축으로 드롭가이드와 스톱퍼를 활용한 거푸집 설치·해체 드롭 공법 (SSFD공법)
- 기술분야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프롭헤드, 드롭키, 보패널, SL시스템을 이용하여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하는 기술로서, 설치 시 SL시스템은 벽체거푸집과 보패널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작업발판과 거푸집 드롭을 위한 추가부재 설치없이 해체작업이 가능하고, 필러서포트 설치가 필요없는 거푸집공법이다. 드롭가이드가 완속 하강을 유도하고 스톱퍼에 의한 거푸집 하강높이의 제한 및 드롭충격 완충을 통해 소음 저감이 가능한 기술이다.

- 신기술의 범위

SL(Soffit Length) 시스템으로 벽체거푸집과 보패널을 연결하고, 프롭헤드와 드롭키 및 드롭가이드를 활용하여 해체 시 서포트를 축으로 슬래브거푸집 전체를 낙하시키고 스톱퍼를 통해 하강높이를 제한하는 거푸집공법(층고 3.5 m 이하의 구조물 적용 가능)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해당 없음

5.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